

공공이용 차별 금지와 민권법

안내 자료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UNRUH 민권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에 의한 차별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합니다

Unruh 민권법(Civil Rights Act)은 주택과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에 의한 차별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합니다. “사업장”이라는 용어에는 정부 및 공공 단체도 포함됩니다.

Unruh 민권법 표현에서는 특히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국, 장애, 질병, 유전 정보, 결혼 유무, 성적 지향, 시민 자격, 모국어, 이민 상태 등을 이유로 주택과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Unruh 법에 따라 보유한 보호 권리는 이러한 특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위에 명시한 사항과 유사한 개인의 특성을 사유로 사업장에서 가하는 모든 임의적이고 의도적인 차별 행위를 막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또한 이 법은 장애인이 길거리나 고속도로 또는 기타 공공장소, 대중교통, 공공시설 장소, 놀이공원이나 리조트, 숙박 시설,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나 신호 또는 안내견 내지 대체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개인의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행동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사업장의 권리와 이 법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정인의 부당한 행동 또는 지장을 주는 행동은 거래 거부 또는 서비스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Unruh 민권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완전하고 동등한 수용, 혜택, 시설, 특혜,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해당되는 장소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텔과 모텔
- 사업 목적이 있거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
- 식당
- 극장
- 병원
- 미용실과 이발소
- 임대주택과 공유경제 주택을 포함하는 주택 시설
- 공공기관
- 소매점

노인 주택

Unruh 민권법에는 노령 시민의 신체적 및/또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주택 시설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은 공정 고용 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의 가족 유무 및 연령 조항에서 예외이며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정은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노령 시민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 대한 유사한 조항은 연방 공정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이용 차별 금지와

안내 자료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UNRUH 법의 위반 예시

다음 예시는 Unruh 민권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Unruh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기타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투숙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특정 인종 그룹의 투숙객에게만 서비스 요금 \$100를 부과하는 호텔
- HIV 양성 진단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
- 빈자리가 있고 다른 손님이 바로 앉는 상황이 아닌데도 동성 커플에게 테이블 제공을 거부하는 식당
- 시각 장애인에게 안내견을 매장 안에 들여놓을 수 없다고 통보
- 의류 수선, 이발, 드라이클리닝, 식당이나 술집의 음료 같은 비슷한 서비스 이용 가격을 남녀에게 다르게 청구
- 입장 및 이용 시 “여성 할인”을 적용(예: ladies night) 한다는 사업 홍보

CRD 지원 업무

민권 부서(Civil Rights Department, CRD)는 다음을 통해 이 법을 집행합니다.

1. 괴롭힘 및 차별 민원 조사
2. 관련 당사자의 자발적 민원 해결 지원
3. 위법 행위의 기소
4.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서면 자료를 제공하고 세미나 및 회의를 열어 Unruh 법에 대해 교육

보호 계층이라는 이유로 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CRD 민원은 마지막으로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합당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CRD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를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민원 제기처

민권 부서

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

수신자 부담: 800.884.1684

TTY: 800.700.2320